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경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92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0.

발 의 자 : 김경진 · 송희경 · 주승용

김수민 · 이동섭 · 유동수

김광수 · 김삼화 · 오세정

최도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부칙에서 「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‘장기’ 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(5년)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.

특히, 현재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‘18. 6. 30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(5년)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.

또한,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‘판결’이 아닌 ‘결정’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,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‘확정일’로 되어 있어,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·치료감호·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·치료감호·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,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‘고지일’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·치료감호·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.
- 나.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확정일이 아니라 부착명령의 ‘고지일’로 개정함.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 본문 중 “확정일”을 “고지
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
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, 치료감호 또는 보호
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효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
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
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부칙 제2조에 의한 부착명
령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(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) ① ~ ③ (생 략)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 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<u>확정</u> <u>일부터 5년으로</u> 하며,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. <u>다</u> <u>만,</u> 출소예정자, 출소임박자 또 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 효가 중단된다.</p>	<p>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(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고지 일----- -----. 다 만,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 른 범죄의 형,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 되지 않고----- -----. -----.</p>